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투자금반환 등

원 고

1. [redacted]

2. [redacted]

3. [redacted]

[redacted]

4. [redacted]

원고2, 4의 주소 [redacted]

5. [redacted]

원고1, 5의 주소 [redacted]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 조효동 [redacted]

피 고

1. [redacted]

[redacted]

2. [redacted]

주소 [redacted]

송달장소 [redacted]

3.

변 론 종 결

판 결 선 고

주 문

1. 피고 [redacted], 주식회사 [redacted]은 연대하여 원고 [redacted]에게 145,000,000원, 원고 [redacted]에게 50,000,000원, 원고 [redacted]에게 50,000,000원, 원고 [redacted]에게 50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[redacted]은 [redacted]부터, 피고 주식회사 [redacted]은 [redacted]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2. 피고 주식회사 [redacted]은 원고 [redacted]에게 70,000,000원, 원고 [redacted]에게 50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3. 원고 [redacted]의 피고 [redacted]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[redacted]의 피고 [redacted]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

가. 원고 [redacted]와 피고 [redacted]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2/5는 원고 [redacted]가, 3/5
은 피고 [redacted]이 각 부담하고,

나. 원고 [redacted]과 피고 [redacted]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[redacted]
[redacted]가 부담하며,

다. 원고 [redacted] [redacted] [redacted]와 피고 [redacted]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
고 [redacted]가 부담하고,

라. 원고 [redacted]과 피고 [redacted]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[redacted]이 부담하며,

마. 원고 [redacted] [redacted] [redacted]와 피고 [redacted]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[redacted]이
부담한다.

5. 제1,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.